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55
----------	-------

발의연월일 : 2026. 3. 10.

발 의 자 : 장철민 · 허 영 · 박정현
김영환 · 박찬대 · 정준호
민병덕 · 채현일 · 홍기원
이기현 · 김태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에 이르는 과세표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업의 막대한 초과 이익을 적절히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정유사 등이 우월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여 실제 원유 수입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국제 유가 지표 상승만을 핑계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반대로 유가 하락기에는 기존의 높은 가격을 꼬수로 유지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실정임. 국가

경제와 직결된 에너지 시장에서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여 과도한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도적 관리가 불가피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공급가 선반영 인상 및 국제유가 하락에도 공급가를 높게 유지하여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경우를 과세 요건으로 명시함. 해당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 대비 5억 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등).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소득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액 및”을 “법인세액, 제55조의3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으로 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내국법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세율보다 낮게 조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것
2.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국제유가 지표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국제유가가 급락하였음에도 석유제품 등의 공급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등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소득”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것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

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 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 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 득으로 한정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u>4. 제55조의3에 따른 초과소득</u>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도소득에 대한 <u>법인세액</u>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배당 및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 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 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 ----- ----- ----- ----- ----- <u>법인</u> <u>세액, 제55조의3에 따른 석유정</u> <u>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u> <u>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대한 법</u> <u>인세액</u> 및----- ----- -----.

1. · 2. (생략)

② (생략)

<신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의3(석유정제업자 및 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
과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
인 중 내국법인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
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3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초과소득에 100
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을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
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교통·에
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
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서울보다 낮게 조정한 서울
을 적용하여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것

2.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하게
국제유가 지표 상승을 이유
로 공급가격을 선반영하여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국제유
가가 급락하였음에도 석유제
품 등의 공급가격을 높게 유
지하는 등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하 이 조에서 “초과소득”
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것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
인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평균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